

☎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삼구빌딩 7, 8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87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이성민 [6574] 보험급여팀장 김선우 [6576] 팀원 이보근 [6587]/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07073호

시행일자 2021. 09. 08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
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요양병원의 수가 산정방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541호(2021. 09. 03.)
2.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은 「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」(보험급여과-6135호, 2020. 12. 24.)를 적용함을 안내해 온 바, 이를 붙임과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적용기간 : 2021. 07. 16.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

붙임 : 요양병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련 청구방법 질의응답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